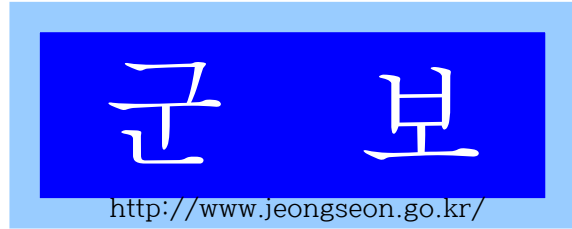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7호 2018. 9. 5.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910호 수렵면허 취소 공시송달 공고.....3
- 정선군 공고 제2018-911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
- 정선군 공고 제2018-912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
- 정선군 공고 제2018-913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1
- 정선군 공고 제2018-914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2
- 정선군 공고 제2018-915호 정선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6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910호

수렵면허 취소 공시송달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 규정(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정 선 군 수

1. 공고제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렵면허 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년 8월 28일 ~ 2018년 9월 12일(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위반내용	행정처분명	반송사유
김*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탄길 48	수렵면허 미갱신(1년초과)	면허취소	폐문부재
엄*식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3길 6-11, D동 415호(강원랜드사원2차아파트)	수렵면허 미갱신(1년초과)	면허취소	폐문부재

4. 공고장소 : 정선군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청문안내

- 1) 일시 : 2018. 9. 13. (목) 14:00 ~ 16:00
- 2) 장소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3층)
- 3) 유의사항

- 청문대상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이 없을 시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수립면허 취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033-560-2345/fax 560-2019)

정선군 공고 제2018-911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조항 신설
- 나. 법률 상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가능조항 삭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근거법령 수정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4조제3항)
 - 중소기업청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나.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 삭제
- 다. 공유재산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37조제2항)
- 라.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령 수정(안 제45조)
 -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61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33-560-2358
- 팩스 : 033-560-259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를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위탁료의 80퍼센트

제45조 중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 ----- ----- ----- ----- -----.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정선군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현행 제37조와 같음)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위탁료의 80퍼센트

제45조(지방세의 준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7.11.28]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을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을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정선군 공고 제2018-912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내용 반영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
- 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내용 반영
(안 제11조제1항)
-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항 신설
(안 제1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61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33-560-2358
- 팩스 : 033-560-259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를 “다음 각 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로 하고, 제1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정선아리랑시장”으로 하고, 제2호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고한구공탄시장”으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북시장

4. 임계사통팔달시장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태백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정선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군 도매업·소매업 업무 담당과장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4.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 -- -----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이하"지정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 ----- 다음 각 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 ----- ----- 1. 정선아리랑시장 2. 고한구공탄시장 3. 사북시장 4. 임계사통팔달시장
<신 설>	제14조의3(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태백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정선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	--

		6. 군 도매업·소매업 업무 담당과장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

관계법령 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

정선군 공고 제 2018-913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2018년 12월 31일말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여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조례 제4247호, 2018.2.2.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

- 시각장애4급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연장 (안 제2조)
 - 감면 적용시한 3년 연장(일몰기한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3조)
 - 감면 적용시한 3년 연장(일몰기한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9조)
 - 감면 적용시한 3년 연장(일몰기한 2021년 12월 31일 까지)

나.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삭제(안 제4조)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해당 조항 삭제함.

다.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범위확대(안 제10조)

- 세액 공제대상에 전자송달 방식 신청자 감면추가

3. 입법예고 : 2018. 8. 28. ~ 2018. 9. 18.(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세무회계과)

○ 전화 : 033-560-2288

○ 팩스 : 033-560-2587

붙임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유사”를 “비슷”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한다.

제16조제3항과 제4항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llegible]

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

---- 2021년 12월 31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은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비슷 -----

-----.

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09.29.]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생략)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1.-----
- 2.-----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략)

제16조(감면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 2021년 12월 31일 -----
-----.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면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는 -----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
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
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른다.

④ -----
----- 않는 -----

-----.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
----- 않는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5.3.27., 2015.12.29.>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2.3., 2016.12.2.>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15.2.3.>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전문개정 2010.6.8.]

정선군 공고 제2018-914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08월 2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의 일치 및 상위법 위임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변경(안 제4조 제1항)
 - 본적, 주소 또는 거소 →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
- 수수료의 징수방법 다양화 (안 제5조)
 - 현금징수 →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내용 반영(안 제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감면 대상 추가(안 제7조제1항 제3호, 제8호, 제9호, 제10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별표 1,3,5 각각 삭제하고, 별표 1 신설

3. 입법예고 : 2018. 8. 28. ~ 2018. 9. 18.(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9월 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 주 소 : (24264) 강원도 정선읍 봉양3길 21

- 전 화 : 033-560-2288

- 팩 스 : 033-560-2587

- 전자우편 : wil@korea.kr

붙임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정선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사항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신청이나 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분을 포함한다)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3,000원	
○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1건	2,000원	
○ 낚시터업 허가·등록 지위승계 신고	1건	3,000원	
○ 관상어 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1건	100,000원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40,000원	
○ 안마시술소 개설변경 신고 (단,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	1건	20,000원	

[별표2] <개정 2016. 12. 3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종 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1건당 30,000원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1건당 5,000원

각망어업) 수수료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건당 20,000원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1건당 1,000원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삭제 <2016. 12. 30.>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	1건당 50,000원

획승인 수수료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1건당 1,500원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관 계 법 령

1. 【별표1】 신설규정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4·9·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낙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낙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낙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 원을 말한다.

2. 법령에 규정되거나 삭제된 수수료 대표적 사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6.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6.2.3., 2017.12.12.>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2.3. (생략)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9]

수수료(제27조 관련)

1.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가. 영업신고: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000원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

라.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수수료의 면제

1)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가. 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3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내외 위생용품 관련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정선군 공고 제2018-915호

정선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일부 조문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과의 일치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 반영 : 안 제1조, 안 제2조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입법예고 : 2018.8.28. ~ 2018.9.18.(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정선군수 (참조 : 세무회계과장, 전화 : 560-2288, 팩스 : 560-25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522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 E-mail : wil@korea.kr

붙임 정선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제목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9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특정한”을 “특별히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중”을 “금융기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성립된다”를 “이루어 진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용 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잔여기간(잔여기간)”을 “남은 기간(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9인 이상 12인 이내”를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부하거나”를 “발급하거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지전에”을 “통지 전에”으로,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초래하는”을 “가져오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정선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 ----- 필요-----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금고”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	1. ----- 「지방회계법」 제38조----- ----- ----- ----- ----- ----- ----- -----

- 융기관과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2.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3.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회계처리-----
-----.
4. -----

----- 특별히 정한-----

-----.
5. ----- 금융기관 중 -----

-----.
6. -----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
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
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안
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금고
를 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
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
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
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
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
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
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로 한다)에 대해 금고를 지정
하는 경우
4. · 5. 삭 제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

----- 이루어 진다.

제3조(적용 범위) ----- 적용 범
위-----.

1. (현행과 같음)
2. -----

----- 않
는다.

제4조(금고지정)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남은
기간(남은 기간-----

② -----

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 지정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고 배점부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3. (생략)

④ ~ ⑦ (생략)

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

----- 넘을 -----.

③ -----

----- 않는다.

제5조(금고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로-----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9명 이상 12명 이하-----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황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 (생 략)

제8조(금고 지정절차) ① (생 략)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9조의2(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생 략)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

----- 않는다.

⑨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 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하거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① -----

----- 「지방재정법」 제34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지

정하되,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생 략)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
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
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
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
다.

④ (생 략)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이 정하
는 것 외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에-----
----- 들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가져오는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규정) -- 규칙에서 --
----- 필
요한----- 따
로-----.

관 계 법 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④ 생략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